

◎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5-709호

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 열람공고(4차)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-419호(2005.12.29.)로 정비구역지정 고시,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07-40호(2007.05.17.), 제2007-68호(2007.07.19.), 제2010-50호(2010.07.15.)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141호(2017.04.20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389호(2017.11.02.)로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,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18-56호(2018.07.05.)로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9-21호(2019.03.07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2-154호(2022.08.25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4-51호(2024.04.18.)로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4-83호(2024.06.20.)로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352호(2024.07.18.)로 특별건축구역 지정 해제 및 재지정 고시된 동대문구 제기동 288번지 일대 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서 등을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 사본을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.

2. 관계서류는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 및 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 비치하여 열람기간 동안 일반인에게 열람하며, 본 수용재결 신청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2025년 5월 15일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

가. 열람기간 : 2025. 5. 15. ~ 2025. 5. 29.(15일 이상)

나. 열람서류 :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

다. 열람장소 :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, 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
사무실

라. 수용재결신청 내역

- 1) 사 업 명 : 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- 2) 재결신청자 : 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(조합장 이교현)
- 3) 사 업 위 치 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288번지 일대
- 4) 재결신청내용 : 토지 및 물건 등의 수용
- 5) 수용재결신청 토지 및 물건 내용
 - 토지 : 동대문구 제기동 422번지
- 6) 관계서류: 생략(열람장소 비치)

마. 수용대상 토지 및 물건 상세내역 : 생략(비치된 관계서류 참고)

바. 열람 편의를 위하여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는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
(☎02-2127-4666) 및 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
(☎02-966-9000)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